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11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제2200511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안 제19조의2)	2

I.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제2200511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배현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6. 14.

다. 회 부 일 : 2024. 6.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 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어린이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공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3. 검토의견

가.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안 제1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범죄</u>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 ----- ----- ----- ----- ----- <u>린이공원과 그 밖에 범죄</u> ----- -----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상 도시공원은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인 어린이공원도 생활권공원 중 하나로 도시공원에 포함되어 있음.

공원녹지법 제19조의2는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
공원 내 주요 지점은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이하 “CCTV등”이라 한다)
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의 경우 범죄·사고

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어린이공원에는 CCTV등을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원녹지법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구분】

구분	세분	내용
국가도시공원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생활권공원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주제공원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기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CCTV등의 설치·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어린이공원에 폐쇄회로 텔

레비전을 2대씩 설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283억원, 연평균 56.6억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추계¹⁾하고 있음.

2024년 6월 기준 CCTV 설치율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공원 8,756개소 중 83.3%인 7,294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전체 도시공원 CCTV 설치율인 68.8%보다는 높은 상황임.

【 어린이공원 CCTV 설치현황(2024년 6월 기준) 】

(단위: 개소, 대)

전국	어린이 공원수 (A=B+C)	CCTV 설치			CCTV 미설치 어린이공원수(C)
		CCTV설치 어린이공원수(B)	CCTV 설치대수	공원당CCTV 평균설치대수	
합계	8,756 (100.0%)	7,294 (83.3%)	18,157	2.5	1,462 (16.7%)
서울	1,229	1,092	2,696	2.5	137
부산	333	247	404	1.6	86
대구	419	363	632	1.7	56
인천	435	364	889	2.4	71
광주	276	272	765	2.8	4
대전	321	252	373	1.5	69
울산	313	276	682	2.5	37
세종	52	48	98	2.0	4
제주	149	142	653	4.6	7

1) 개정안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시나리오 1) 공원당 CCTV 2대씩 설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총 283억원, 연평균 56.6억원

(시나리오 2) 공원당 CCTV 3대씩 설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총 425억원, 연평균 84.9억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1. 어린이공원 CCTV 2대 설치	5,428	5,547	5,663	5,782	5,893	28,314	5,663
2. 어린이공원 CCTV 3대 설치	8,137	8,316	8,490	8,668	8,861	42,471	8,494

전국	어린이 공원수 (A=B+C)	CCTV 설치			CCTV 미설치 어린이공원수(C)
		CCTV설치 어린이공원수(B)	CCTV 설치대수	공원당CCTV 평균설치대수	
경기	2,138	1,882	4,929	2.6	256
강원	304	239	511	2.1	65
충북	334	273	840	3.1	61
충남	408	351	1,079	3.1	57
전북	309	263	654	2.5	46
전남	316	256	572	2.2	60
경북	745	475	1,117	2.4	270
경남	675	499	1,263	2.5	176

* 어린이공원 CCTV 설치현황은 2024년 6월 전국 시도로부터 제출된 결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전국 도시공원 CCTV 설치현황(2024년 6월 기준) 】

(단위: 개소, 대)

도시공원 수 (일부조성 포함)	CCTV		
	설치공원수	미설치공원수	설치수량
18,010	12,384(68.8%)	5,626(31.2%)	49,339

* 자료: 국토교통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CCTV등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다른 도시공원 내의 범죄 사각지대 등 범죄위험이 높은 지역에 CCTV등의 설치가 지연될 우려가 없지 아니하므로, CCTV등 미설치 도시공원의 전체적인 현황 및 향후 예산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어린이공원의 설치 의무화보다는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재량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81